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한국은행 자료제출요구 대상기관 확대〉

■ 정성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49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자료제출요구 대상기관 확대(안 제87조제3호)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성호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9. 6.

다. 회 부 일 : 2024. 9.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을 명시하면서 현행법상의 금융기관인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 그리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관을 그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의 비은행 부문이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이 제한되어 있어 비은행권의 부실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전 정보취득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의 금융기관 전체를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87조제3호).

III. 검토의견

1. 자료제출요구 대상기관 확대(안 제87조제3호)

현 행	개정안
○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대상기관 - 금융기관 -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 - <u>금산법상 금융기관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u>	○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대상기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금산법상 금융기관</u>

현행법 제87조¹⁾는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기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행법 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을 제한하는 규정인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삭제하여 동 법률상 모든 금융기관으로 자료제출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자료제출 대상기관에 관하여, 현행법 및 시행령²⁾, 금융통화위원회

1) 「한국은행법」 제87조(자료제출요구권)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자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2.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
3. 제1호와 제2호 모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5조의2(자료제출요구 대상) ① 법 제8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자산규모가 해당 금융업의 평균 자산규모(제1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각 금융업을 같은 금융업으로 보아 산출한 평균 자산규모를 말한다) 이상인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 관한 투

규정인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³⁾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와 더불어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등의 기관 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권별 평균자산규모 이상인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⁴⁾에 따

-
- 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가 해당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3.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업
 4.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
 5. 「보험업법」에 따른 제3보험업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 ② 제1항에서 자산규모 및 평균 자산규모는 법 제87조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3)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 제2조(거래대상기관) 당좌예금거래를 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
 2.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
 3. 법 제79조 단서에 따른 다음의 법인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및 한국거래소
 - 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바.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의 여신을 받는 영리기업
 4. 법 제8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의 금융기관 중 외국 중앙은행과 CLS은행(CLS Bank International), 국제금융기구 및 외국 정부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한국은행과 예금거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 기관
-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 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큰 금융기관이 대상이 되므로, 소규모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와 더불어 현행법상 자료제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신탁업자·종합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 등도 자료제출 대상기관에 포함됨.

< 자료제출 대상기관 범위 >

한은법상 금융기관	한은당좌예금거래 약정 체결자 ¹⁾	금산법상 금융기관 ²⁾	
		현행	개정안
1.은행법에 따른 은행 2.은행지주회사	1.정부대행기관 2.투자매매업자 3.투자중개업자 4.집합투자업자 5.한국예탁결제원 6.증권금융회사 7.종합금융회사 8.자금중개회사 9.한국거래소 10.보험회사 11.한국수출입은행 12.예금보험공사 13.상호저축은행 14.한국은행여신을 받는 영리기업 15.외국 중앙은행, CLS은행, 국제금융기구, 외국 정부 16.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기관	업권별 평균자산규모 이상인 다음 기관 1.투자매매업자 2.투자중개업자 3.집합투자업자 4.보험회사 5.상호저축은행 6.여신전문금융업자	모든 1.~6.의 기관 7.중소기업은행 8.투자자문업자 9.투자일임업자 10.신탁업자 11.종합금융회사 12.금융지주회사

주 : 1) 한은 당좌예금거래 약정 체결자의 경우 은행법상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또한 포함되어 있으나 이미 '한은법상 금융기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편의상 삭제

2) 금산법상 금융기관과 한은 당좌예금거래 약정 체결자 간 중복되는 기관 유형이 있는데, 모든 한은 당좌예금거래 약정 체결 대상자가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일한 유형의 금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금산법상 금융기관의 범위가 더 넓음.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자.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차.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개정안에 따를 경우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잠재위험 분석이 보다 원활히 수행되고 한국은행의 금융정보 접근이 확장됨으로써 보다 정밀한 금융시장분석이 가능해지고 금융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첫째, 개정안에 따르면 자료제출요구 대상기관이 중소금융기관까지 확대되나, 이들 금융기관에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고려가 필요함.

개정안의 내용은 ‘금융안정’이 목적으로 도입된 2011년 당시 동일하게 논의되었던 사안으로, 당시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의 모든 금융기관으로 자료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되었으나 금융기관의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둘째, 현재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간에 체결한 정보공유약정⁵⁾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5)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기재부·금융위·한은·금감원·예보간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2012.9)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조항은 다음과 같음.

1. 기본 원칙

나. 각 기관은 금융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부터 제출받고 있는 업무보고서 등의 금융 정보를 최대한 공유함으로써 각 기관의 정책수행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중복보고에 따른 업무부담을 최소화한다

법률」 상의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가 공유되고 있고, 2023년 10월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간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⁶⁾를 체결하여 비은행금융회사 관련 정기보고서와 개별적으로 입수한 금융정보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현행법 체계에서도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를 통해 은행 이외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는 것이 가능하고⁷⁾,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비은행권 자료제출 요구시 영세 금융회사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개정안에 대한 관계 기관 의견은 다음과 같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현재도 한국은행이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 전체 금융기관 관련 자료를 공유받고 있어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고, 금융감독과 통화정책을 분리하는 현재의 통합 금융감독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자

6)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간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에 이와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음

1. 기본 원칙

나. 양 기관은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저축은행, 신탁, 농협, 수협, 산림조합, 이하 같다) 및 그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부터 정기 혹은 수시로 제출받고 있는 금융정보를 최대한 공유함으로써 양 기관의 책무수행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 및 중앙회(이하 “비은행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중복보고에 따른 업무부담을 최소화한다.

7) 「한국은행법」 제94조(자료 협조)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통화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는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료제출요구 대상기관 확대 시 여러 기관을 통한 중복 자료요구 등으로 인해 중소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업무과중, 경영부담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7조(자료제출요구권)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자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제87조(자료제출요구권) ----- -----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호와 제2호 모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 ----- ----- ---금융기관

문의처

02)6788-5148